

**코로나19 확진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 
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**

# 정보공개 지침 안내





“

**확진자의 이동경로 공개 시,  
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노출되면  
2차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.**

”

지난달 22일 확진 판정을 받은 S사 직원 A 씨는 지자체 페이스북에 본인의 성씨, 성별, 거주하는 아파트 이름, 남자친구가 특정 종교 교인인 사실까지 공개됐다.

이로 인해 A 씨는 일부 악성댓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.

출처: 확진자 동선 공개 “사생활 침해 우려” VS “공익 우선”, <아시아경제>, 2020.03.09.



“

**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 
감염병예방법 개정 취지에 지자체 및 언론 등  
많은 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.**

”

---

감염병 환자의 정보공개는 **역학적 이유,**  
**법령상의 제한,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** 등을 고려하여  
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합니다





## 개인정보

**성별, 나이 등 확진자의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.**



성별



나이





## 장소·이동수단

이동경로는 확진자 정보와 연결시키지 않고  
장소별 목록 형태로 공개합니다.

(예시)

확진자 정보는 기재하지 않음

~~00시 확진자 #000번~~

시도	시군구	장소 유형	상호명	주소 (도로명 주소)	노출일시	소독여부
00도	00시	판매업	AB마트 (CD점)	00도 00시 00 12 1층	10.5(월), 13:00~15:00	소독완료
00시	00구	대중교통	100번 버스 (AB아파트~CD회관)	-	10.5(월), 13:00~13:20	소독완료





## 정보공개 기간

**확진자의 정보공개는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까지 공개합니다.**

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하여 지자체의 **확진자 이동경로 공개범위 및 삭제시기 준수** 등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.

코로나19 확진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 
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

# 정보공개 지침 안내

